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 보고서

2009. 12. 24(목)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민경환 의원 외 6인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9년 12월 8일
- 회부일자 : 2009년 12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09.12.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설치된 충청북  
도 농어촌개발기금의 사업비 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고,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사업비 지원 한도액의 증액(안 제7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의 정비 등(안 제2조)
- 현실에 맞도록 조문 정비 등(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민병완)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설치된 농어촌개발기금의 사업비 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용관리”를 “관리·운용”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이라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팔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100만원”을 “120만원”으로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바목으로 하고, 본문중 “100만원”을 “120만원”으로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 고용된 자

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제2조제3호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인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6호 중 “농업전문대학”을 “농업계 2년제대학”으로, “32세”를 “만 32세”로 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귀농인”이라 함은 만 55세 이하의 자가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농업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충청북도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농수산물”이라 함은 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용관리”를 “관리·운용”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충청북도 농정심의회”를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6호중 “심의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목 중 “대상사업자 선정”을 “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조와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선정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도지사가 시·군별로 지원품목과 사업비를 배정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은 이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5천만원”을 “1억 원”으로, “2억 원”을 “5억 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3천만원으로 한다”를 “5천만원 이내로 한다”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를 “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11조 제목 중 “세입·세출”을 “세입·세출”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특별회계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기금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u>운용관리</u>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농·어업</u>”이라함은 「<u>농업·농촌기본법</u>」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농업(축산업·임업을 포함한다) 및 「<u>수산업법</u>」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어업을 말한다.</p> <p>2. (생 략)</p> <p>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u>농어촌정비법</u>」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향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p>	<p>제1조(목적) -----</p> <p>-----</p> <p>-----</p> <p>-----</p> <p>----- 관리·운용 -----</p> <p>-----.</p> <p>제2조(용어의 정의) -----</p> <p>-----.</p> <p>1. “<u>농·어업</u>”이라함은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가. -----</p> <p>(「<u>농어촌정비법</u>」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p> <p>-----</p>

현 행	개 정 안
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u>100만원</u> 이상인 자 다. (생 략)  <신 설>	나. ----- ----- <u>120만원</u> -----  다. (현행과 같음)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신 설>  라.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u>100만원</u>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법인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바. ----- ----- <u>120만원</u> -----  3. ----- 법 ----- ----- -----.  4. “법인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p>5. (생 략)</p> <p>6. “차세대농업인”이라 함은 농업계고등학교, 농업전문대학, 대학의 농업계열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내인 자 또는 <u>32세</u> 이하인 자로서 충청북도내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6. ----- -----<u>농업계 2년제대학</u>, ----- ----- ----- <u>만 32세</u>----- ----- -----.</p>
<p>7. “<u>귀농인</u>”이라 함은 타 시도에 거주하던 50세 미만인 자 중 전 가족이 1년 이상 충청북도내에 거주하고 농업을 직업으로 삶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7. “<u>귀농인</u>”이라 함은 <u>만 55세</u> 이하의 자가 타 시·도(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농업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농업경영을 <u>목적으로</u>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충청북도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p>
<p>8. “<u>농산물</u>”이라 함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과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의 부산물을 말한다.</p>	<p>8. “<u>농수산물</u>”이라 함은 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의위원회등의 구성) ①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u>충청북도 농정</u>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심의위원회등의 구성) ①----- ----- 관리·운용 ----- ----- ----- -----.  ②----- <u>충청북도 농어업·농촌</u> 및 <u>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u> ----- ---.
③(생 략)	③(현행과 같음)
제5조(생 략)  1. ~ 5. (생 략)  6. 기타 <u>심의회</u> 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u>심의위원회</u> ----- -----
제6조(대상사업자 선정) ①대상사업자 선정은 제5조 및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 ①제5조와 「 <u>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u>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선정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도지사가 시·군별로 지원품목과 사업비를 배정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 <u>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u> 」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가 시군별로 지원품목과 사업비를 배정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규칙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생 략)  ①(생 략)  ②(생 략)  1.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차세 대농업인, 귀농인은 <u>5천만원</u> 이 내로 하며, 생산자단체와 법인 체는 <u>2억원</u> 이내로 한다.  2.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및 법인체는 <u>3천만원</u> 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유통안 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는 <u>5억원</u> 이내로 한다.	제7조(현행과 같음)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 ----- <u>1억원</u> ----- ----- ----- <u>5억원</u> -----.  2. ----- ----- <u>5천만원</u> 이 내로 한다. ----- ----- ----- <u>10</u> 억원 -----.
③(생 략)  제10조(융자금의 회수) ①(생 략)	③(현행과 같음)  제10조(융자금의 회수) ①(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u>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u>에 반납하여야 한다.</p>	<p>②----- ----- -----<u>기금특별회계</u>----- -----.</p>
<p>제11조(<u>세입·세출</u>)</p> <p>①~②(생 략)</p>	<p>제11조(<u>세입·세출</u>)</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p>	<p>③특별회계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관 계 법령

###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 2009.11.28]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8조 (농어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농어촌정비법[시행 2009.12.10]

- 제98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